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7. 3. 28.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15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2007.3.26)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2조 제1호 영업자 정의 규정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제1호)
- 제3조 제1호 기금의 조성 규정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삽입(안 제3조 제1호)
- 제4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개정, 동조 제9호 “집단급식소의 급식 시설 개·보수” 신설(안 제4조)
- 제7조 제1호, 제2호, 제3호를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개정(안 제7조)

- 제8조 제1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로 조정(안 제8조)
- 제10조 제1항 중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동조 제3항 중 “청소행정과장”은 “청소과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제1·2·3·4항)
- 제11조 심의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11조)
- 제12조, 제13조 중 “심의위원회” 명칭 개정(안 제12조, 제13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김완섭)

-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무화와 심의사항 규정, 성과분석,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시 의회 의결 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법령과 조례의 중복을 차단하였으며,
-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 제21조에도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며,
- 안 제5조 제2항 기금운용의 계획은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항에 통합하여 일부 문항 수정하였으며,

- 안 제5조 제3항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 제22조 제2항에도 관련 규정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 안 제6조 제2항의 “은행법”은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 제명 인용에 낫표를 표시하고
- 안 제7조 기금결산은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을 반영하여 “재무보고서” 문항을 신설하며
- 안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 제5항은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삭제하도록 하였음.

4. 修正案 要旨

-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무화와 심의사항 규정, 성과분석,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시 의회 의결 등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법령과 조례의 중복을 차단하였음.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 제1호~제7호, 제9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신설하고, 제2호를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신설하고, 제8호를 제3호로 하고
- 안 제5조 제1항의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항 제1호~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 안 제6조 제1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낫표를 삽입하고,
- 안 제7조의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로 하고, 제1호~제3호를 삭제하고
- 안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3항의 “영등포구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식품위생분야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1 이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동항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5항의 “제3항 제2호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을 “위촉”으로 하고,
- 안 제11조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1호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제4조의 기금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신설하고, 동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 안 제12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2항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 안 제14조의 “제4조 제1호”를 “제4조”로 하고
- 안 제15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관할지역안의”를 “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로 하고
- 안 제16조의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 안 제18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를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 련
번 호	53호

제안년월일 : 2007. 3. 26.

제안자 : 윤준용 위원

1. 수정 이유

-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무화와 심의사항 규정, 성과 분석,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시 의회 의결 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법령과 조례의 중복을 피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안 제4조 제1호~제7호, 제9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신설하고, 제2호를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신설하고, 제8호를 제3호로 하고
- 안 제5조 제1항의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항 제1호~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 안 제6조 제1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낫표를 삽입하고,
- 안 제7조의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로 하고, 제1호~제3호를 삭제하고
- 안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3항의 “영등포구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식품위생분야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동항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5항의 “제3항 제2호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을 “위촉”으로 하고,

- 안 제11조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1호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제4조의 기금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6호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11조 제2호를 삭제하고
- 안 제12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 안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2항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 안 제14조의 “제4조제1호”를 “제4조”로 하고
- 안 제15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관할지역안의”를 “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로 하고
- 안 제16조의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 안 제18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를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명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u>운용·관리</u>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식품위생법</u> 」 ----- ----- ----- ----- ----- <u>관리·운용</u>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u>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u>법 제21조제2항, 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 -----. 2. ~ 5. (생략)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법 제65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 3. (생략) 4. 기타 <u>법 시행령</u> 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조성) ----- -----. 1. <u>법 제65조</u> 및 「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 <u>제37조</u> ----- 2. ~ 3. (현행과 같음) 4. ----- <u>영</u> -----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u>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u></p> <p><u>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u></p> <p><u>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u></p> <p><u>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u></p> <p><u>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u></p> <p><u>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u></p> <p><u>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u></p> <p><u>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u></p>	<p>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u>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u></p> <p>3. (현행과 같음)</p> <p><u>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u></p> <p><u>5.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u></p> <p>6. (현행과 같음)</p> <p><u>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u></p> <p><u>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u></p> <p><u>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용자</u></p>	<p>제4조(기금의 용도) (개정안과 같음)</p> <p><u>1.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u></p> <p><u>2.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u></p> <p><u>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u></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1. ~ 3. (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생략)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현행과 같음) ②-----「은행법」----- ----- ③ ~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p>제7조(기금의 결산)-----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성과분석 및 재무보고서 3. 기금결산보고서 및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p>제7조(기금결산) -----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삭제)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기금운용심의회</u></p> <p>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u>심의회</u>” 라 한다)를 둔다.</p> <p>②<u>심의회</u>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4. 동장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u></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 -----</p> <p>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u>심의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p> <p>②<u>심의위원회</u> ----- --- 10인 이내 -----.</p> <p>③위원장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예산과장, 청소과장, 보건위생과장 2. 식품위생분야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1 이상 임명 또는 위촉된 자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개정안과 같음)</u></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p> <p>----- (이하 “<u>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p> <p>②<u>위원회</u>----- -----.</p> <p>③-----<u>보건소장</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 3. ~ 4. (현행 삭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u>심의회</u>를 대표하고, <u>심의회</u>의 운영을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u>심의위원회</u> ----- ----- <u>심의위원회의</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u>위원회</u> ----- ----- <u>위원회</u>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 13조 (회 의) ①<u>심의회</u>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u>심의회</u>의 회의에 출석한 <u>위원</u>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u>심의회</u>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13조 ①<u>심의위원회</u>의 ----- ----- -----</p> <p>② <u>심의위원회</u> ----- ----- -----</p> <p>③<u>심의회</u> ----- -----.</p>	<p>제 13조 (회 의) ① <u>위원회</u> ----- ----- -----</p> <p>② <u>위원회</u> ----- ----- ----- . (단 서 삭 제)</p> <p>③ <u>위원회</u> ----- -----.</p>
<p>제14(용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용자계획의 공고) ----- <u>제4조</u> ----- ----- ----- -----.</p>
<p>제15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관할지역</u>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p>		<p>제15조(용자대상) ----- <u>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u> ----- ----- ----- -----.</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16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생략)</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용자대상 적격자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6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 위원회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용자금의 대하)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p>		<p>제18조(용자금의 대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 ----- 영등포구 와 금융기관 간 ----- -----.</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범위 확대(안 제3조의1)
- 기금의 용도범위 확대(안 제4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근거 개정(안 제5조,제7조)
-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 개정(안 제8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등 근거 개정(안 제10조,제11조,제12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07.3. 2 ~ 2007. 3. 15) 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법 제21조제2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법 제65조”를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용자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 제목 “(기금결산)”을 “(기금의 결산)”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성과분석 및 재무보고서
3. 기금결산보고서 및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제8조제1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보건위생과장”을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장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청소과장, 보건위생과장
2. 식품위생분야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1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 담당주사로 한다.

⑤제3항제2호에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의 변경
5.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제1항중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식품위생법</u>」 ----- ----- ----- ----- ----- ----- 관리·운용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영업자"라 함은 <u>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법 제21조제2항, 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p> <p>2. ~ 5. (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u>법 제65조</u>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p> <p>2. ~ 3. (생략)</p> <p>4. 기타 <u>법 시행령</u>이 정하는 수입금 등</p>	<p>제3조(기금의 조성) ----- -----.</p> <p>1. <u>법 제65조</u> 및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u>제37조</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영</u> -----</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p> <p>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p> <p>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p> <p>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p> <p>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p>1. ----- -----</p> <p>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p> <p>3. -----</p> <p>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p> <p>5.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 -----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8. -----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용자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 ----- -----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결산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7조(기금의 결산)----- ----- -----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성과분석 및 재무보고서 3. 기금결산보고서 및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p> <p>2. 기금출납원 : 보건위생과장</p> <p>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기금운용심의회</p> <p>제10조(기금운용심의회)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p> <p>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p> <p>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p> <p>4. 동장</p> <p>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p>	<p>제8조(회계공무원) ①----- ----- -----.</p> <p>1.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p> <p>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담당주사</p> <p>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영등포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기획예산과장, 청소과장, 보건위생과장</p> <p>2. 식품위생분야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1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자</p> <p>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⑤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⑤제3항제2호에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동 조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p> <p>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4.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p>	<p>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p> <p>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p> <p>4.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의 변경</p> <p>5.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p> <p>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u>심의회</u>를 대표하고, <u>심의회</u>의 운영을 통할한다.</p> <p>②(생략)</p>	<p>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u>심의위원회</u>----- ----- <u>심의위원회</u> -----.</p> <p>②(현행과 같음)</p>
<p>제13조(회의) ①<u>심의회</u>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u>심의회</u>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u>심의회</u>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회의) ①<u>심의위원회</u> ----- ----- -----.</p> <p>②<u>심의위원회</u> ----- ----- -----.</p> <p>③<u>심의위원회</u> ----- -----.</p>